



2026년

농업기술센터(귀농경영팀) 보조사업 시행지침

농업기술센터



목 차

□ 보조사업 공통사항 안내	2
□ 귀농경영팀 사업 목록	14
□ 사업별 지침	15

보조사업 공통사항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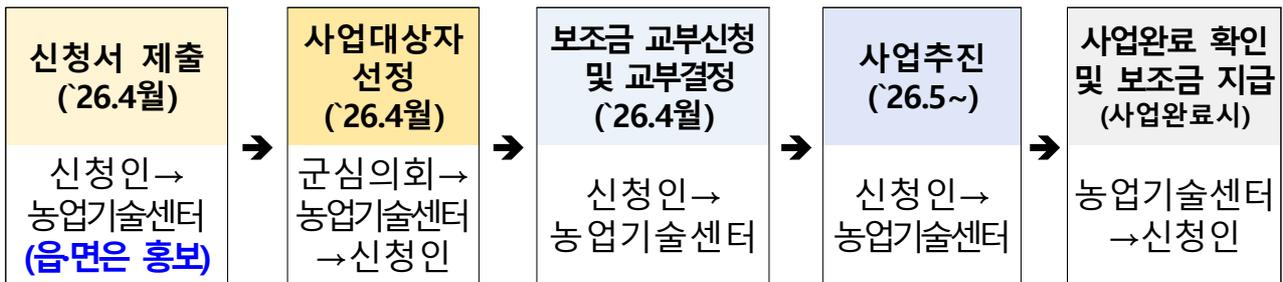
□ 관련근거

-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조
- 농촌진흥법 제2조 3호, 제16조

□ 준수하여야 할 법령·조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사업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26. 4. 1.(수) ~ 2026. 4. 15.(수)
- 신청기간 : 2026. 4. 1.(수) ~ 2026. 4. 15.(수)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귀농경영팀 방문신청
- 현지심사 : 2026. 4. 16. ~ 4. 20.(기간 중)
- 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6. 4. 21. ~ 4. 24.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6. 5월 초순
- 사업추진 : 2026. 5. ~ 11.(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추진)

□ 기본 자격요건

- 2026. 1. 1일 이전 관내 거주자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사업예정지는 본인 소유 또는 사후관리 기간(5~10년) 동안 장기임차가 가능하여야 함
- 기타 자격요건은 사업마다 상이하므로 사업별 자격요건 확인

□ 대상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 제39조 준용
- 사업별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추천하여 최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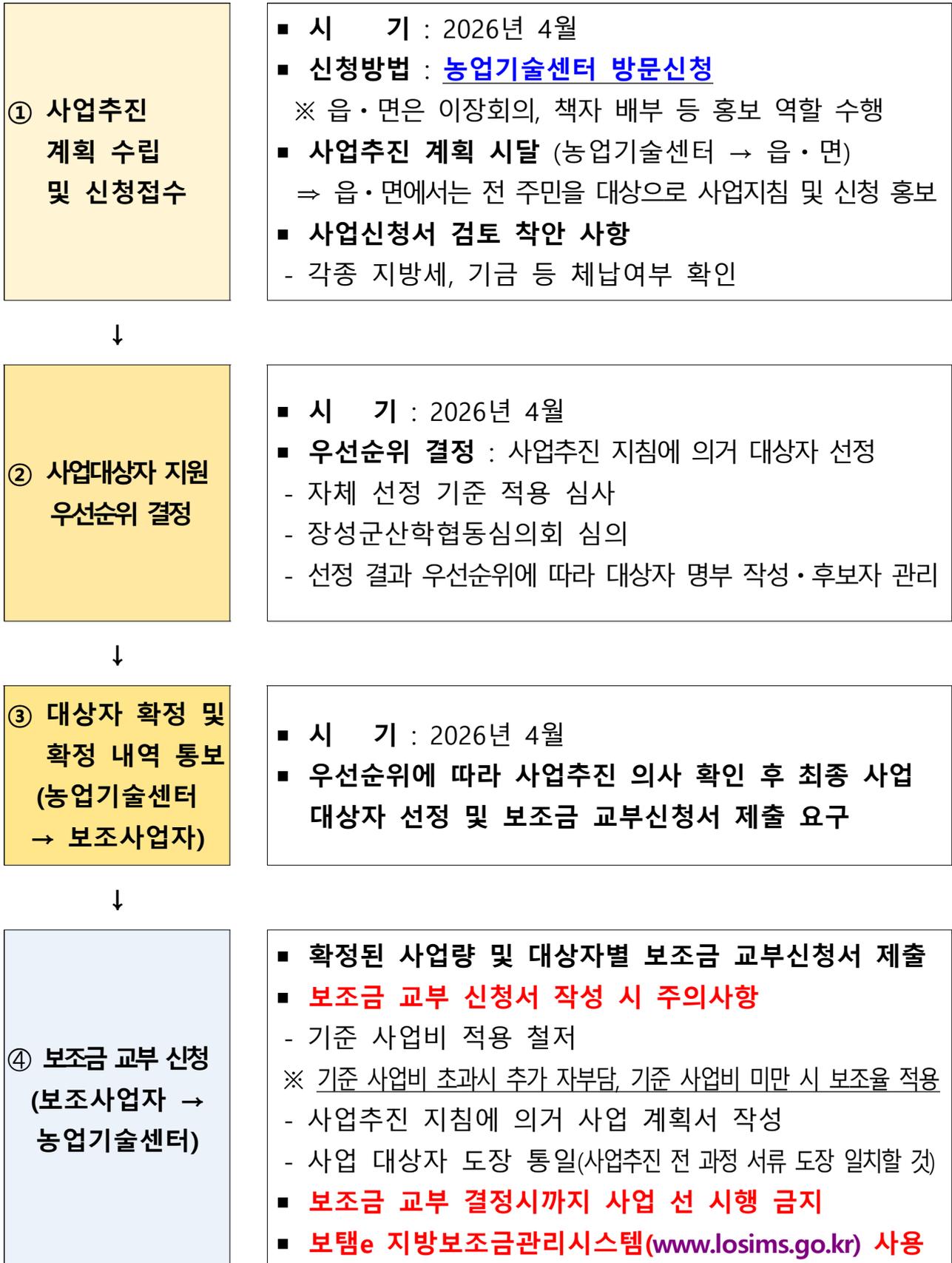
□ 보조사업 추진

○ 필수 이행사항 : 보탭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www.losims.go.kr) 사용

- 교부신청,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정보공시 등 상기 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 추진 의무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교부결정 이전에 추진한 사업은 보조금 지원 불가
 -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 목적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조례, 교부 결정의 내용(교부결정서)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군수가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경우
 -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
- ※ 다만,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참고자료 (보조사업 추진절차)



⑤ 교부신청서 검토

- 보조금 교부 신청서 검토 착안 사항
 - 사업추진 지침 이행 및 보조율 적용 적정 여부
 - 부적격자 발견시 부적격 사유 검증 또는 후순위 대상자 선정
- 부적격자 발생시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추가선정



⑥ 보조금 교부 결정
(농업기술센터
→ 보조사업자)

- 대상자 및 사업량 최종 확정 후 보조금 교부 결정(군)
- 보조금 교부결정 사항 및 사업추진 시행 통보
 - 군(농업기술센터)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추진 지도 감독 (농업기술센터 직접 추진)
-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 미착수시 교부결정 취소**



⑦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 사업추진 지침에 의거 당초 목적대로 사업 시행
- 사업추진 중 사업계획 변경 요인 발생시 군(농업기술센터)에 변경 승인 요청하고 승인을 받고 시행
- 보조사업 완료 후 자부담금을 선 집행 하고 보조금 신청
- 사업 완료 후 군(농업기술센터)에 준공검사 요청



⑧ 보조금 청구
(보조사업자 →
농업기술센터)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하고 보조금 청구
⇒ 군(농업기술센터)으로 **직접 제출**
- 보조금 청구시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 자부담금 선 집행
 - ※ 증빙서류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무통장 입금표
⇒ 모든 사업비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원칙
 - ※ 현금거래, 농협 외상거래는 불인정
 - 사업추진 관련사진(전, 중, 후) 첨부
 - 보조금은 보조사업자에게 지급을 원칙
- **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www.losims.go.kr) 사용**

⑨ 보조금 지급
(농업기술센터
→ 보조사업자)

- 지급방법 : 청구(계좌입금 의뢰서)에 의거 계좌 입금
- 지급전 행정 절차
 - 보조금 청구서류 및 관련 증빙서 검토
 - ※ 사업계획서 대비 사업실적, 날인, 사진 등
 - 현지 준공검사 및 완료 확인 절차 이행
- 보조금 지급 결과 및 정산보고 이행 통보
 - 군(농업기술센터) → 보조사업자
 - ※ 보조금 지급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등 확인
- **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www.losims.go.kr) 사용**



⑩ 보조금 정산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받아 집행 완료 후
군(농업기술센터)에 정산보고
 - 부가가치세 환급 및 각종보험금 납입여부 확인 후 필요시 정산한다.
- 보조사업 사후관리 카드 작성 제출
 - 보조사업자→군(농업기술센터)
- 군(농업기술센터)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의거 전체 사업에 대하여 최종 정산 검사 실시
- **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www.losims.go.kr) 사용**



⑪ 보조사업
사후관리 및
정보공시

- 보조금을 받아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사후관리 한다.
 - 사후관리 부서 : 농업기술센터(필요시 읍·면 협조)
- 사후관리 기간 중 목적 외 사용 또는 양도 등 위법
행위 발생시 보조금 회수하여야 한다.
- **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www.losims.go.kr) 사용**

□ 읍면 협조사항

- 사업 추진일정 및 보조사업 추진절차 및 준수사항 안내
 - 이장회의, 보조사업 안내책자 배부 등 적극적인 농업인이 보조사
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철저

참고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농업용 기자재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개정 2023. 2. 28.>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 (제7조제1호 관련)

1. 농업·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덮자리용, 작물피복용, 과수 또는 수실류(樹實類) 재배용에 한정한다]과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꽃이에 한정한다)
2. 농업·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한다)
3. 농업·임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산물·임산물·축산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4. 농업·임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5. 과일 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정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광망·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표고버섯 건조용 또는 과수·화훼·채소·야생화·산채 재배용에 한정한다)
8. 농업·임업용 부직포·다겹보온덮개·다겹보온커튼(작물·수실류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9. 농업·임업용 배지[培地: 생물을 기르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액체나 고체로, 양액(養液: 양분이 있는 액체를 말한다)·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0. 축산업용 톱밥(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처리과정에서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 또는 그 목재의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것에 한정한다)·이탄(泥炭)·토탄(土炭)·토탄 추출물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정한다)
12. 농업·임업용 방조망(防鳥網) 및 방풍망(과수·수실류·작물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13. 농업·임업용 양수기
14. 별씨밭아기
15. 동력배토기
16. 예취기

17. 가축급여(家畜給與) 조사료(粗飼料: 단백질, 전분 등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용 필름
18. 화훼·야생화용 종자류
19. 채소봉지(애호박·오이용에 한정한다)
20. 버섯재배용기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22. 폐사축처리기
23. 축사세척기
24. 카우브리쉬
25. 축산 악취제거기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27. 작물 지주대
28. 농업·임업용 무인 항공기
29. 농업·임업용 로더(2톤 미만)
30. 농업·임업용 굴착기(1톤 미만)
31. 동력제초기
32. 농업·임업용 고압세척기
33. 농산물 및 임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m²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4. 농업·임업·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에 한정한다)
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36.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37. 축산용 정액 희석제
38. 축산용 인큐베이터
39.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41. 축사용 쿨링 패드
42. 축사용 워터컵
43. 축사용 바닥재[철재(鐵材) 바닥재에 한정한다]
44. 농산물·임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 재질에 한정한다)
45. 화훼·야생화 재배용 배지
46. 화훼·야생화 재배용 화분(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에 한정한다)
47. 유해동물(해충을 포함한다) 포획기
48. 농업용 양과망·마늘망·배추망·양배추망·옥수수망
49. 축산 착유용 라이너
50. 축산용 분만실 깔판

51. 축산용 대인소독기
52. 축산용 방역복
53. 조사료 생산용 네트
54. 팽연왕겨
55. 탈봉기
56. 소문망
57.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
58. 점적(點滴)호스(점적테이프 및 분수호스를 포함한다)
59. 농업용수 처리기
60. 농업용 제습기
61. 농산물 건조기
62. 농산물 선별기 및 정전기
63. 개량 물꼬(논물의 수위를 조절하는 장치를 말한다)
64. 농업용 관비기
65. 농업용 양액기
66. 스마트팜용 센서류(온실이나 축사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악취 등을 감지하여 환경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 구동기류(驅動機類) · 복합환경제어기

참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 기자재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개정 2024. 2. 29.>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제3조제3항관련)

1. 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2. 농업용 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4.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5.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한다)
6.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7. 삭제 <2008.2.22>
8. 콤바인
9. 곡물건조기
10. 삭제 <2006.2.9>
11. 삭제 <2010.2.18>
12. 동력중경제초기
13. 동력수확기
14. 삭제 <2021. 2. 17.>
15. 동력상토조제기
16. 정식기
17. 농업용 난방기
18. 일담배건조레이크이송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0. 삭제 <2006.2.9>
21. 삭제 <2006.2.9>
22. 탈곡기
23. 동력휴립기
24. 삭제 <2006.2.9>
25. 비료살포기
26. 삭제 <2008.2.22>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 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 세척기

31. 동력심경기
32. 삭제 <2008.2.22>
33. 동력구굴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삭제 <2006.2.9>
37. 동력비닐피복기 및 동력피복개폐기
38. 육묘상자
39. 삭제 <2006.2.9>
40. 파종기
41. 농업용 스프링클러
42. 버섯재배소독기
43. 삭제 <2006.2.9>
44. 삭제 <2021. 2. 17.>
45. 삭제 <2006.2.9>
46. 삭제 <2006.2.9>
47. 삭제 <2008.2.22>
48. 삭제 <2006.2.9>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2] <개정 2008.2.22>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3조제4항관련)

1. 육추기 2. 양계용케이지
3. 축산급이기 4. 삭제 <2008.2.22>
5. 삭제 <2008.2.22.> 6. 자동급수기
7. 니 플 8. 부리절단기
9. 포유기 10. 양돈케이지
11. 삭제 <2008.2.22.> 12. 삭제 <2008.2.22>
13. 이표기 14. 삭제 <2008.2.22>
15. 삭제 <2008.2.22.> 16. 임신진단기
17. 음수투약기 18. 목책기
19. 삭제 <2008.2.22.> 20. 집란기
21. 계란선별기 22. 삭제 <2008.2.22>
23. 삭제 <2008.2.22.> 24. 집란벨트
25. 부화기 26. 착유기
27. 삭제 <2008.2.22.> 28. 삭제 <2008.2.22>
29. 원유냉각기 30. 삭제 <2008.2.22>
31. 사료배합기 32. TMR배합기
33. 사료절단기 34. 싸이로
35. 삭제 <2008.2.22.> 36. 사료저장탱크
37. 축산분뇨제거기 38. 축산용 정화조
39. 축산분뇨용 교반기 40. 축산용 분뇨펌프
41. 축산분뇨고액분리기 42. 삭제 <2008.2.22>
43. 축산분뇨발효건조기 44. 축산분뇨살포기
45. 축산분뇨저장탱크 46. 축산분뇨포장기
47. 산란상 48. 난 좌
49. 바닥재(플라스틱, 콘스라트재에 한함) 50. 사료통
51. 벌통 52. 채밀기(採蜜器)
53. 소초(巢礎)세트[소초광(巢礎筐)·사양기(飼養器)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3의2] <개정 2021. 1. 5.>

영세율이 적용되는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제3조제6항제1호 관련)

1. 키토산(Chitosan) 2. 목초액
3. 천적 4. 약초 등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제재(담배는 제외한다)
5. 허브식물 및 기피식물 6. 님(Neem) 추출물
7. 데리스(Derris) 추출물 8. 제충국 추출물
9. 담배잎차(순수니코틴은 제외한다) 10. 해조류, 해조류 추출물 및 해조류 퇴적물
11. 버섯 추출액 12. 클로렐라(담수녹조) 및 그 추출물
13. 규산염 및 벤토나이트(Bentonite) 14. 규산나트륨
15. 규조토 16. 이탄(泥炭, Peat), 토탄(土炭, Peat moss) 및 토탄 추출물
17. 사리염(황산마그네슘) 및 천연석(황산칼슘) 18. 석회석 등 자연에서 유래한 탄산칼슘
19. 생석회(산화칼슘) 및 소석회(수산화칼슘)
20. 점토광물[벤토나이트·펄라이트(Pearlite) 및 제올라이트(Zeolite)·일라이트(illite) 등]
21. 붕소·철·망간·구리·몰리브덴(Molybdenum) 및 아연 등 미량원소
22. 맥반석 등 광물질 가루 23. 자연암석분말·분쇄석 또는 그 용액
24.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 25. 마그네슘 암석
26. 황산칼륨, 랑베나이트(Langbeinite: 해수의 증발로 생성된 암염) 또는 광물염
27. 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 28. 천연 인광석 및 인산알루미늄칼슘
29. 미생물 및 미생물추출물
30. 혈분·육분(고깃가루)·골분(뺏가루)·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동물부산물
31. 구아노(Guano: 바다새, 박쥐 등의 배설물) 32. 동·식물성 오일
33. 파라핀 오일 34.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
35. 제당산업의 부산물[당밀, 비나스(Vinasse), 식품등급의 설탕 및 포도당을 포함한다]
36.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 37.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부산물
38. 황 39. 구리염 40. 산염화동 41. 밀납(Beeswax) 및 프로폴리스(Propolis)
42. 중탄산나트륨 및 중탄산칼륨 43. 과망간산칼륨 44. 식초 등 천연산
45. 나무 숯 및 나뭇재 46. 에틸알콜 47. 인산철
48. 성 유인물질[페로몬(Pheromone)] 49. 인지질(Lecithin)
50. 카세인(Casein: 유단백질)

2026년 귀농경영팀 소관 사업 목록

□ 농촌지원과

○ 귀농경영팀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량	보조율	사업비			지원내용	담당자	비고
				총계	보조	자담			
계	1개 사업	1개소		5.7	5.7				
1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1개소	100%	5.7	5.7		선도농가 현장실습수당 (멘토 월 40만원) (멘티 월 80만원)	홍철웅 ☎7180	

1.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 사업에 대한 해석은 농촌지원과 귀농경영팀 홍철웅(061-390-7180)입니다.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확한 작목 선정 및 실현 가능한 영농계획 설계에 도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3. ~ 12.
- 사업량 : 1개소
- 사업비 : 5,700천원(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 사업대상
 - (선도농가)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 (연수생) 농촌지역으로 이주 5년 이내 귀농인(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가능)
- 사업내용
 - 4개월 15일간 연수생 희망 작목별 선도 농가 협력 현장실습 추진
 - 선도농가 교수수당 40만원/월, 연수생 연수수당 80만원/월 지원

※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2026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사업 지침」에 따름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2026. 4. 15.(수) 18:00
- 신청방법
 -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경영팀 방문 제출

○ 신청서류

구분	신청서류	비고
연수생 제출서류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연수신청서	서식 별첨 붙임4
	◦ 귀농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시스템 입력)	(붙임5, hrd.rda.go.kr)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입변동일 포함)	
	◦ 가족관계등록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보안서약서	서식 별첨 붙임6
	◦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 별첨 붙임7
	◦ 교육 이수증	
	◦ 농업경영체등록증(또는 확인서)	
	◦ 농업 관련 학교 졸업증	선택
	◦ 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선택
	◦ 마을주민과 화합 및 마을기여도 증빙	선택
선도농가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등록증(또는 확인서)	
	◦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서식 별첨 붙임1, 2
	◦ 선도농가 학습지원 계획서(시스템 입력)	(붙임 3, hrd.rda.go.kr)
	◦ 보안서약서	서식 별첨 붙임6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서식 별첨 붙임7
	◦ 실습포장·교육장·교재 등 구비 여부	(증빙사진)
	◦ 동일·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증빙	선택

※ 사업 신청 서류는 사업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임대차 계약의 경우 6년 이상(건축물은 11년 이상)

□ 기타사항

○ 지원 제외 대상

- 군에서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이주 후 1년 이내에 재 전입하여 사업을 신청한 자
- 금치산자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귀농인 지원사업을 신청한 자

□ 서식 현황

1. [붙임 1 서식]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선도농가)
2. [붙임 2 서식]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선도농가)
3. [붙임 3 서식] : 선도농가 학습지원 계획서(선도농가 시스템 입력)
4. [붙임 4 서식]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연수생)
5. [붙임 5 서식] :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연수생 시스템 입력)
6. [붙임 6 서식] : 보안서약서
7. [붙임 7 서식]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8. [참고] : 현장실습보고서 (매월 시스템 입력)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① 신청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주사업장 주소				
연 락 처		이메일 주소		
② 연수가능작목	(주작목)	(부작목)		
③ 연수가능지역				
④ 연수가능기간				
⑤ 자기소개	1. 주작목의 영농규모 2. 전체 영농규모 3. 영농경력(년)			
⑥ 현장실습 연수 운영계획 요약				
⑦ 기타 특이사항				
⑧ 추천기관(단체) 확인란	(소속)	(직위)	성명 (인)	적합여부

본인은 2025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침에 의거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작성요령

- ① 신청자 : 농업인은 성명과 생년월일, 농업법인은 명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② 연수가능작목 : 선도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 ③ 연수가능지역 : 선도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기입
- ④ 연수가능기간 :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2~12월)
- ⑤ 자기소개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 근거로 이용됨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영농규모, 영농경력, 매출액 등을 상세히 기재
(필요시 별지에 작성이 가능)
- ⑥ 현장실습 연수 운영계획 요약 : 현장실습교육의 연수과정 및 연수방법 등을
기재하되, 별첨의 운영계획서를 요약하여 기입
- ⑦ 기타 특이사항 : 연수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 ⑧ 확인란 : 도농업기술원장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수시행자
(선도농가) 후보자를 확인할 때에는 자질과 소양, 영농기술
수준, 연수 관련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필요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①신청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②연수가능작목	(주작목) (부작목)		
③연수가능기간			
④영농규모 및 기술보유 현황			
⑤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⑥월별 실습사항			
⑦실습 기대효과			
⑧추천기관 확인란	(소속)	(직위)	성명 (인) 적합여부

본인은 2026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뒷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작성요령

- ① 신청자 : 농업인은 성명과 생년월일, 농업법인은 명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② 연수가능작목 : 선도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 ③ 연수가능기간 : 연수가능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 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3월~12월)
- ④ 영농규모 및 기술보유 현황 : 연수생이 선도농가를 선택하는 판단 자료로 이용됨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 ⑤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 연수생에게 제공하는 연수내용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 ⑥ 월별 실습사항 : 연수희망기간 내에 월별로 진행되는 주요 현장실습사항을 기재
- ⑦ 실습 기대효과 : 연수희망기간 내에 현장실습 수행시 기대되는 영농 기술 및 경영 능력 향상 등을 기입
- ⑧ 확인란 : 도농업기술원장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선도농가 후보자의 운영계획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선도농가 후보자와 협의·보완 등 조치 필요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선도농가 학습지원 계획서(시스템 입력)

구 분	주 요 내 용							기타 사항
개 요	시·군·명	선도농가		연수생 성명 (예상)	연수희망기간		연수 지원 작목	
		성명	영농연월		시작일	종료일		
핵심 생산기술								
경영·유통 및 창업								
농촌적응 노하우								
견학·지인 소개								
기대효과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①연 령(만)		②(이주 전) 거주지	예) 전남 나주시
③기 이수 귀농 교육 과정명	예) 농촌진흥청 제대예정군인 귀농교육('19)		
현 주소지			
연 락 처		이메일 주소	
④연수희망작목	(주작목)	(부작목)	
⑤연수희망지역	(최우선 지역)	(우선 지역)	(차선 지역)
⑥연수희망기간			
⑦자기소개 및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유			
⑧만40세 미만의 경우	농식품부 2025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사실 여부.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미신청		
⑨기타 특이사항			
⑩추천기관 확인란	(소속)	(직위)	성명 (인)

본인은 2026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를 받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작성 시 유의사항(뒷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작성요령

- ① 연 령(만) :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 ② 이주 이전 거주지 : 귀농 전에 거주했던 지역을 간략하게 기재
- ③ 공인 귀농교육과정 : 우선 순위 선정시, 활용하고 해당 시군은 필요 시
귀농 교육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 ④ 연수희망작목 : 연수를 희망하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 ⑤ 연수희망지역 : 연수를 희망하는 지역을 순차적으로 읍면단위로 기입
(희망 선도농가(농업법인) 기재 가능)
- ⑥ 연수희망기간 :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3월~12월)
- ⑦ 연수를 받고자하는 사유 : 선도농가와와의 약정체결시 판단 근거로 활용하는
내용이므로 구체적으로 기술(별지 사용가능)
- ⑧ 만40세 미만의 경우 농식품부 2025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
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사실 여부에 반드시 체크
- ⑨ 기타 특이사항 : 선도농가에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 ⑩ 추천기관 : 해당 지역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귀농 총괄부서에서 연
수신청서 사전 확인·보완 후 추천 가능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붙임 5]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시스템입력)

연수개요

시군명	연수생		선도농가 성명(예상)	현장실습기간 (희망기간)	희망 연수작목
	성명	귀농연월			
		2022. 3		4.1 ~ 9.30	

현장실습교육 동기(목적)

현장실습교육을 통해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3가지 이상)

【농업기술, 사업화기술, 사업마인드, 관계강화 등】

-
-
-
-

선도농가에게 바라는 점

보안서약서

본인은 농촌진흥청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현장실습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협약기간 중은 물론, 협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농촌진흥청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운영지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담당공무원의 운영지침 상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3. 농촌진흥기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 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현장실습교육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현장실습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성실한 자세로 현장실습교육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인)

장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참고]

현장실습 보고서(시스템 입력)

○ 사업개요

구!분	이름	작목	계약기간	월 근무일수	규모(m ³)
귀농연수생					
선도농업인					

○ 경영계획, 실천, 점검(To Do List)

* 연수생 작성

번호	경영계획	경영실천(창업접목)
1		
2		
3		
4		
5		

○ 향후 계획 및 시사점

선도농업인	연수생

○ 농업경영 코칭

* 시군 담당자 작성

	담당자 확인 (서명)
2026년 월 일	